

[서식 예] 토지 개별가격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 △ 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〇〇. 〇. 〇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20〇〇년 개 별토지가격결정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정□□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(이하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매수하여 20○○. ○. ○.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, 이를 소유해오고 있습니다.
- 2. 피고는 2000. O. O.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00년 개별공시지가를 OO시 OO구 OO동 OO 대 100㎡를 표준지로 하여 ㎡당 금 600,000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.



- 3.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을 조사 비교하고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므로, 그 가격결정과정에서 표준지의 선정, 토지특성의 조사 비교 및 가격조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면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. (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누159 판결 참조)
 -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토지의 이용 상황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, 지목, 토지용도(실제 용도), 주위 환경, 위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(지가형성요인)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며,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표준지에 의거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유사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.(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누3442 판결 참조)
- 4. 그런데 위 표준지인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100㎡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00m 떨어진 20○○년, 20○○년 공시지가 표준지(20○○년, 20○○년 공시지가 모두 ㎡당 금 800,000원)로서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(일반주거지역) 및 지목(대)이 동일하지만 토지용도(실제 용도)가 이 사건 토지(아파트부지)와는 달리 주상복합입니다.
 - 반면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50m 떨어진 같은 동 〇〇의〇 대 200㎡는 역시 20〇〇년, 20〇〇년 공시지가 표준지(20〇〇년, 20〇〇년 공시지가 모두 ㎡당 금 400,000원)로서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및 지목이 동일함은 물론 토지용도도 아파트부지로 동일한 바, 이 두 표준지는 토지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가형성요인들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상이(相異)정도가 비슷하며, 20〇〇년의 〇〇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면 토지용도가 아파트부지인 경우의 가격배율이 주상복합인 경우에 비하여 0.8 정도로 열세에 놓여있습니다.
 - 그리고 이 사건 토지와 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 동 ○○의 □ 대지(○○아파트 부지), 이 사건 토지에 가까운 ○○시 ○○구 ○ ○동 □□ 대지(○○아파트 부지)의 20○○년 개별공시지가는 각 금 300,000원, 금 250,000원으로 결정되었고, 각 부지들의 표준지는 위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200㎡로 되어 있습니다.
- 5. 사정이 이와 같다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지가 같은 동 ㅇㅇ 대지에



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용 상황이 좀더 유사한 표준지이고, 또한 같은 동 ○ 대지를 표준지로 하여 결정된 이 사건 토지의 20○○년 개별공시지가 인근 유사 토지들의 그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,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○○년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은 표준지 선정을 잘못하였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, 이에 그 취소를 구하기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

1. 갑 제2호증 2000년 00시 개별공시지가 일람표

1. 갑 제3호증 2000년 00시 토지가격비준표

첨부서류

1. 위 입증방법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 부 서 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○○행정법원 귀중



[별 지]

부 동 산 의 표 시

○ ○시 ○ ○ 구 ○ ○ 동 ○ ○ 대 100 m². 끝.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 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